M - 154 - 2012

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(GRP)탱크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 개요

- o 작성자: 한국안전학회 박재학 교수
- o 제·개정 경과
- 2012.11 기계분야의 제정지침으로 선정
- 2012.11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.11 총괄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 - BS 4994; Design and manufacture of nonmetallic storage tanks
  - BS EN 13121-4: Inspection and Test
  - HSE Guidence Note PM75: Glass reinforced plastic vessel and tanks 에 대한 advice to users (3rd Edition,플랜트 및 기계분야)
  - 산업안전보건법
  - KS F4811: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(기계·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)

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11 월 29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M - 154 - 2012

#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(GRP) 탱크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

#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화학공법, 식음료공업에 있어서 원료 및 제품의 저장 및 화학반응 공정상 내식성, 내열성이 요구되는 반응용기에 필요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(GRP 또는 GFRP)탱크의 제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탱크의 제조에 있어 설계, 재료의 선정, 제조 및 검사와 수리 등 유지관리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(Glassfiber reinforced plastic: 이하 "GRP"이라 한다.)"라 함은 내식성 또는 내열성이 좋은 합성수지에 유리섬유를 혼합하여 인장강도가 우수한 성능을 가진 복합재료를 말한다.
  - (나) "GRP 탱크"라 함은 화학공업 또는 식음료산업에 있어 가벼우면서도 내식성, 내약품성 및 내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RP로 제조된 반응용기, 탈취탑(Scrubber), 폐수처리조, 저장탱크 등 용기(Vessel)를 통칭한다.
  - (다) "최대운전압력(Maximum operating pressure)"이라 함은 압력을 받는 압력용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면서 최고로 올라 갈 수 있는 압력을 말한다.
  - (라) "최대운전온도(Maximum operating temperature)"라 함은 운전 중에 올

M - 154 - 2012

라갈 수 있는 최고온도를 말한다.

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설계 시 및 제조 시 고려사항

#### 4.1 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얻는 필요한 정보

- (1) 공정 및 운전조건
- (가) 저장 등 취급물질정보(물질명, 농도, 밀도 등) 및 함유불순물
- (나) 설계압력(또는 진공시 진공압) 및 설계온도
- (다) 운전압력(또는 진공시 진공압) 및 운전온도
- (라) 운전방식(공정 순환주기 조건)
- (마) 공정상 마멸 또는 마식문제 발생물질 함유 등에 관한 정보
- (2) 설치장소 조건
- (가) 설치장소의 주위온도(최대, 최소)
- (나) 부가적 부하(바람, 눈 및 GRP탱크에 연결된 배관 등에 의한 추가부하)
- (다) 설치 및 정비 시 작업자 및 사용 장비에 의한 추가부하
- (라) 지하매설시 토양조건 및 탱크 위로 교통하중부가 등 추가부하
- (마) 지진부하

#### (3) 특수조건

- (가) 인접공장설비의 진동여부
- (나) 교반운전 여부
- (다) 기계적 충격위험 여부
- (라) 운반도중 부가적 부하 여부
- (마) 화재 저항성 향상 여부

M - 154 - 2012

#### 4.2 설계도에 표시될 상세사항

- (가) 주요 외관칫수와 오차범위의 표시
- (나) 설치강도 계산서
- (다) 동체(Shell)의 공칭두께(오차포함)
- (라) 강화형태 (타입, 적층(Laminate)배열과 층수)
- (마) 부분적 강화형태
- (바) 열경화성 라이닝이 있는 경우 용접부 상세도
- (사) 볼트 및 플랜지재료와 상세사항
- (아) 개스킷 재료와 상세사항
- (자) 외부 표면처리의 상세사항
- (차) 맨홀(Manhole) 및 검사구(Inspection opening)의 요구사항

# 4.3 설계 및 제조시 고려사항

- (가) 사용될 합성수지 계통(Synthetic resin system)
- (나) 사용될 강화섬유물질 사양
- (다) 재료의 기계적 성질
- (라) 사용 또는 저장될 화학물질
- (마) 열경화성 라이닝(Lining)을 할 경우 백킹층(Backing laver)의 허용여부
- (바) 방향성을 고려한 강화를 한 경우 강화물질(유기섬유)의 방향
- (사) 사용될 라이닝과 적층(Laminate)시스템
- (아) 지지대 설계
- (자) 원주방향의 제작 오차
  - 직경600 mm미만: 5 mm이하
  - 직경600 mm이상: 직경의 0.25%이하
- (차) 사다리 등 탱크에 접근방법에 대한 상세사항
- (카) 수압시험 압력 또는 필요시 피로강도시험을 위한 부하반복회수(Load cyclic variation)
- (타) 검사기관
- (파) 기타 특수고려사항

#### M - 154 - 2012

- 승인된 설계에 추가 변경사항 시 변경관리
- 현지제작을 할 경우 특수제작절차서
- 적층결함 수정과 수정방법
- 핫플레이트(Hot plate)용접이 사용될지 여부
- 필요시 적층시험편과 기계적 시험범위에 대한 규정

#### 5. 재료 선택 시 고려사항

#### 5.1 합성수지(Synthetic resin)

합성수지 재료 선택 시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GRP탱크가 사용될 환경 즉 내식성, 내약품성 및 내열성등 특정 환경부하 (물질종류 및 농도) 및 최대허용온도에 따라 합성수지를 선택하여야 한다.
- (2) GRP제조자는 사용될 환경부하에 대한 정보를 합성수지 공급자에 제 공하여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도록 한다.
- (3) 특정 산화성 산류 및 알칼리류와 유기용매에 취약한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 특정 환경부하에 대한 수지의 내식성 시험 및 내열성시험을 행하여 선 택한다.
- (4) 설계온도는 GRP탱크가 받을 최대운전온도와 합성수지가 연화가 일어나는 온도의 차이는 최소 20°C이상(40°C 정도가 바람직)이 되도록 한다. 최대 운전온도 고려 시 공정상 발생하는 이상반응 등에 의항 온도까지를 반영해 야 한다.
- (5) GRP탱크의 외부표면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탱크 내 용액의 넘침 (Overflow) 경우 또는 스팀을 이용한 청소 시 고온에 노출 경우 등 용기 가 받을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.
- (6) 화재 시 화재저항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재지연제 첨가 등 특정 환경 에서의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첨가제를 첨가하여 사용한도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.

M - 154 - 2012

- (7) 합성수지 본연의 색깔을 가진 GRP탱크는 노출될 경우 햇빛을 투과하여 쉽 게 열화하거나 탱크의 미생물성장조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염료의 추가를 고려하도록 한다.
- (8) GRP는 전기적으로 절연체이지만 정전기가 축적되어 잠재적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탱크 내에 인화성 액체저장 등 점화원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 정전기 제거장치를 고려해야 한다.
- (9) GRP탱크 제조에 사용되는 열경화성 합성수지의 종류와 특성은 <표 1>과 같다. 표에서 내식용 합성수지는 성형 후 열을 가해도 열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열경화성수지계로서 불포화 에스테르계 또는 비닐 에스테르계를 사용하며 내식성과 사용환경(저장물질, 농도및 운전온도)에 따라 합성수지 제조자와 협의하여 적합한 수지를 선택하도록 한다.

<표 1> 내식용 합성수지의 종류와 특성

분류	종류	특성	내식 성능				
			산	염	알칼리	용제	산화제
불포화 폴리 에스테르계 수지	이소프탈산계	80℃및 PH10이하에서 뛰어난 내식성	0	0	×	×	×
	비스페놀계	산, 염기, 염소 등 각종 화학약품에 뛰어난 내식성	0	0	0	×	×
	헤트산계	크롬산 등 강한 산화제에서 뛰어난 내식성	0	0	×	×	0
비닐 에스테르계 수지	비스페놀계	산, 염기, 염소 등에서 뛰어난 내식성 내열 충격성 우수 높은 충격강도	0	0	0	×	×
	노블락계	산, 염기, 용매 등에서 뛰어난 내식성 고온에서 높은 강도 유지	0	0	0	0	0
	취소형(Br)비 스페놀계	내식성 및 기계적 강도 뛰어남 Br함유로 뛰어난 내연성	0	0	0	×	×

(범례: ◎우수, ○양호, ×사용불가)

#### 5.2 유리섬유

(1) 유리섬유는 성분이 주로 SiO<sub>2</sub>, AlO<sub>3</sub>, MgO, CaO, R<sub>2</sub>O, B<sub>2</sub>O<sub>3</sub> 등으로 구성 되어 탱크의 기계적 강도를 유지시켜 주는 보강제 역할을 하고 있다.

#### M - 154 - 2012

- (2) 탱크 성형물의 요구강도와 형상 및 합성수지와의 함침성에 따라 적절한 유리섬유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.
- (3) 직조형태에 따라 로빙사(Roving cloth), 촙트스트랜드매트(Chopped strand mat), 촙트매트 (Chopped mat)등이 있으며 유리섬유 종류별 해당 KS규격을 <표 2>에 나타낸다.
- (4) 유리섬유 제품은 통풍이 잘되는 건조장소(10~35°C, 상대습도 70% 이하)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유리섬유의 종류 KS규격 번호 유리섬유 로빙 (KS L 2313) 유리섬유 로빙포 (KS L 2315)

(KS L 2317)

(KS L 2507)

(KS L 2508)

절단유리섬유 매트

유리섬유 실

유리섬유직물

<표 2> 유리섬유의 종류

# 6. 제조공정(성형공정)

#### 6.1 일반사항

- (1) GRP탱크의 제조는 관련 설계표준 및 설계사양과 제조자의 성형표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통해 제작되어야 한다.
- (2) 탱크에 연결되는 배관 등은 적절하게 지지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 설계 시 계산된 변형한도가 커질 경우 산기류 환경에서 환경응력파괴(Environmental stress cracking)를 일으킬 수 있다.
- (3) GRP탱크는 합성수지의 혼합층과 유리섬유강화로 제작되므로 각 층이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기계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. 이런 성질은 제조방식으로서 복합층이 필라멘트 와인딩법(Filament winding method)으로 성형될 때 심하게 일어나므로 설계 시 부하가 정확한 방향으로 걸리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

M - 154 - 2012

#### 6.2 성형공정

GRP탱크의 성형방법으로는 수적법(Hand layup method)과 필라멘트 와인딩법 등이 있으며 보통 표면층, 중간층, 보강층을 한층으로 하고 사용환경 및 강도에 따라 중간층과 보강층을 반복하여 2내지 3층 성형을 한다.

#### (1) 표면 내식층

내부표면에는 강화물질인 유리섬유 매트(Mat)(유리섬유 중량 10%전후)가 노출되지 않도록 0.2~0.5 mm 두께로 합성수지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기포, 균열, 핀홀 등이 없도록 한다.

#### (2) 중간 내식층

표면 내식층 다음 부분으로 잘게 자른 유리섬유 가닥 매트(Glass chopped strand mat, 중량으로  $20\sim30\%$ 정도)로  $2\sim2.5$  mm의 두께를 유지하며 되도록 보강한다.

#### (3) 외부 보강층(강화층)

외부 보강층은 화학적으로 내식성 및 기계적 강도면(인장강도 및 굴곡강도)에서 안정된 구조를 이루게 하므로 천매트(Mat cloth), 로빙사(Roving cloth)를 사용하는 부분은 서로 겹치지 않게 하고 적층 시 겹치는 부분은 최소 25 mm 이상 되도록 한다.

외부표면은 강화유리섬유의 노출을 없게 하고 예리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 야 한다. 외부표면에 내부식성이 요구되면 표면 내식층과 같이 수지함량을 많 게 한 유리섬유로 구성되도록 한다.

#### (4) 상도(Top coating)

성형물의 표면에 도포하여 방수, 색상, 광택 등을 부여하므로 피도물의 재질 및용도에 따라 겔코트, 왁스를 혼합한 수지 등 상도용 재료를 선택하도록 한다.

M - 154 - 2012

#### (5) 절단부분

모든 절단부위는 코팅하여 유리섬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빈 부분은 폴리퍼티(Poly putty)로 채우고 화학적 환경에 노출된 부분은 유리섬유로 보강 되도록 한다.

#### 6.3 제조 시 취급상 안전에 관한 사항

- (1) 합성수지와 이와 혼합되는 촉매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저장하여야 한다. 특히 촉매의 경우 직사광선을 피하여야 한다.
- (2) 촉매와 촉진제는 직접 혼합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므로 절대 직접 혼합해서는 안 된다. 혼합 시 수지에 촉진제를 충분히 혼합한 후 촉매를 섞도록 한다.
- (3) 운반 시에는 촉매와 촉진제의 혼재 적재를 하지 않도록 한다.
- (4) 촉매와 수지가 직접 인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피부에 접촉하였을 경우 비눗물로 충분히 씻도록 한다.
- (5) 수지와 촉매 등을 혼합할 때는 충분한 환기를 하여야 한다.
- (6) 유리섬유 취급 시에는 반드시 방진마스크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#### 7. 설치 상 안전 고려사항

GRP탱크의 많은 손상은 설치중의 문제에 기인하므로 설치 시에는 제조자가 권 장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. GRP탱크는 충격 저항성이 약하므로 설치 중 또 는 검사 중 탱크 출입 시 기계적 손상이 없도록 한다.

- (1) 설치장소는 사전에 검사하여 요철이나 부스러기가 없도록 한다.
- (2) GRP탱크를 들어 올리거나 차량에 탑재할 때에는 용기에 손상이 없도록 다

#### M - 154 - 2012

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
- (가) GRP용기 취급용 줄걸이로 와이어로프는 기계적 손상을 주므로 대신 섬 유로프 줄걸이를 사용한다.
- (나) 탱크이동시 탱크에 부착된 노즐, 배관등 부속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부착된 리프팅러그(Lifting lug)를 사용한다.
- (3) 탱크에 연결된 배관에 걸리는 총 부하는 용기의 설계한도를 넘지 않도록 적절히 지지되도록 설치한다.
- (4) 탱크와 볼트로 체결할 부위는 탱크에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상태로 하도록 한다.
- (5) GRP탱크가 도로 옆 등 차량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설치될 경우 적절한 내 충격 방벽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도록 한다.
- (6) GRP탱크는 설치장소의 정위치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탱크고정용 적절한 자재의 브래킷(Bracket)과 볼트 등으로 고정하고 접지를 실시한다.
- (7) GRP탱크가 압력용기로 사용될 때에는 안전인증을 획득한 압력방출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(8) 지하배설용 GRP탱크는 충분히 넓게 파서 공간제한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하고 확고한 기초위에 고정하여 호우 침수 시 물에 뜨지 않도록 한다. 또한 지하탱크 위로 차량이 운행 될 때는 탱크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콘 크리트 슬래브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
# 8. 운전과 유지관리시 고려사항

- (1) 사용 중에는 설계 시 의도된 용도의 사용, 주기적 정비 및 점검을 통해 기계적 건전성(Mechanical integrity)이 유지되도록 한다.
- (2) GRP탱크의 운전은 설계부하 범위 내에서 훈련된 운전자에 의해 행하여지 도록 한다.

M - 154 - 2012

- (3) GRP탱크의 운전이 최대허용온도 및 압력을 상회하는 등 허용운전범위를 벗어나는 운전조건일 때 운전조건 이탈(Deviation)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안전성 및 기계적 건전성을 검증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.
- (3) GRP탱크위 입출입은 밀폐공간출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위험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뒤 출입하여야 한다.

# 9. 검사와 시험

#### 9.1 설치전후의 검사와 시험의 일반사항

- (1) 용기에 대한 검사와 시험은 제작완료 후 및 설치한 후 사용하기 전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자격자에 의하여 수행한다.
- (2) 육안검사는 용기의 일반적 상태, 용기본체 재질, 노즐 및 배관 등 연결류의 상태와 표면결함 여부를 검사에 포함한다.
- (3) 주된 검사는 충격에 의한 손상과 마멸상태, 용기의 외부표면 및 내부표면상 태에 집중하고 수압시험 전후에 실시한다.
- (4) 필요한 경우 수압에 대한 압력시험, 덧붙임선(Lining seam)에 대한 스파크 테스트(Spark test)를 행한다.
- (5) 시험 및 검사조건과 결과는 기록되어 유지되어야 한다.

#### 9.2 사용 중 검사와 시험

#### (1) 일반

(가) 사용 중 검사는 저장물질과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검사주기로 검사자 격자에 의해 수행한다. 특히 첫 번째 사용 중 검사가 GRP탱크가 설계, 제조,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와 라이닝부 누출여부(변색징후, 균열, 기 공, 환경상 부식징후 점검)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. M - 154 - 2012

- (나) 허용된 운전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탱크의 기계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.
- (다) 검사기술은 저장물의 종류, 운전조건, 탱크에 사용된 자재, 운전중 파손 (Failure)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나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기술을 사용한다.
- (라) 탱크의 설계수명이 다한 경우 탱크의 연장사용여부는 수명연장검사를 행한 후 재사용하여야 하며 검사 자격자에 의해 실시하되 사용연수에 따른 잠재적 열화를 포함하여 검사항목과 검사범위를 정한다.
- (마) 검사결과는 탱크가 다음 검사까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한 수정작업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(바) 검사기록은 전에 수행했던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활동적인 열화기구 (Active degradation mechanism)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(2) 외부검사

- (가) 외부검사항목은 사전에 작성한 검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. 외부검사만 으로 충분한지 또는 내부검사를 포함한 추가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 해야 한다.
- (나) 검사결과 열화현상이 발견되면 탱크의 계속된 사용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.
- (다) 검사 시 주의 깊게 검사해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.
  - 동체 저부 이음매
  - 분기(Branch) 및 부속 승하강 장치 부착점
  - 배관 및 밸브지지대
  - 동체 지지점
  - 탱크기초와의 고정점

M - 154 - 2012

(라) 지하 매몰 탱크에 위험물질을 저장한 경우 일상적인 모니터링 대안으로 서 탱크주위에 검사구(Inspection door)를 만들어 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(3) 내부검사

- (가) 탱크에 산기류를 저장한 경우 어떤 환경에서는 적층(Laminate layer) 를 따라 진행성 변형균열(Progressive strain cracking)을 일으키므로 저장물 질 및 운전특성에 따라 주기적 검사가 필요하다.
- (나) 내부검사는 밀폐공간 출입허가 및 현장감독 등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안 전조치가 필요하다.
- (다) 내부검사 중 과도한 부하에 의해 탱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출입수단 및 작업수단(비계 또는 공구류)을 통제하도록 한다.
- (4) 내·외부 검사 시 열화징후

검사결과 아래와 같은 열화현상이 발견되면 탱크의 계속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.

- 표면상태의 변형
- 표면재료의 연화
- 별마크의 균열
- 적층 균열 또는 층분리
- 유리섬유의 돌출
- 국부적 부풀음(Local swelling)
- 변색(흰색 또는 유색 반점)
- 표면으로 스며나온 액체방울
- 균열 또는 열구(Fissures)

# 10. 탱크의 수리(Repair)

#### M - 154 - 2012

- (1) GRP탱크의 강도는 기지(Matrix)에 걸쳐 섬유의 연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수리하기가 어렵다.
- (2) 수리 시에는 수리표면을 그라인딩으로 넓고 깊게 파낸 후 채워넣기 수리 (Filling repair)를 하도록 한다.
- (3) 탱크전체의 기계적 건전성(Mechanical integrity)에 영향을 주는 수리는 그절차에 있어 사용자와 수리전문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(4) 수리작업이 완료되면 기계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압시험을 수행하고 수리부분은 다음 검사계획에 포함하도록 고려한다.
- (5) 모든 수리에 대한 기록은 서류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  - 작업절차
  - 수리재(Repair material)
  - 적용된 수리기술
  - 도면
  - 시험 증명서